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9. 3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성원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기능 (안 제3조)
- 구성 (안 제4조)
- 위원장의 직무 (안 제5조)
- 위원의 임기 (안 제6조)
- 회의 (안 제7조)
- 의견청취 등 (안 제8조)
- 수당 및 여비 (안 제9조)
- 운영세칙 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개축여부의 심의로 하였고, 제2항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교육시설물이거나, 교육부에서 개축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개축심의위원회를 총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면서, 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을 시설과장으로 하였으며, 당연직 위원을 예산과장, 학교혁신과장, 재무과장으로 하였음.
-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하였고, 안 제7조에서는 회의 개최 및 의결 절차에 관하여 정하였음.
-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10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.
- 본 조례안은 기존에 교육감 훈령으로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 심의를 조례에 규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지와 주요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